

본 조례는 이민 신분이나 직업 신분과 무관하게, 자치제로 편입되지 않은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내에서 일하고 있는 피고용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

#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최저 임금 조례

본 조례는 2016년 7월1일자로 발효됩니다.

본 조례는 자치제로 편입되지 않은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내에서 어느 특정한 주 동안에 적어도 2시간을 근무하는 피고용인들에게 적용됩니다. 고용주들에게는 피고용인들이 근무한 모든 시간에 대해서 아래에 기술된 최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요구됩니다.



이 포스터는 작업장에서 눈에 쉽게 띄고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영어, 스페인어, 그리고 작업 기능에 관해서 고용주가 피고용인들과 주로 사용하는 (영어나 스페인어가 아닌) 다른 주된 언어로 전시되어야 합니다.

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법규 챕터 8.100

## 최저 임금

대규모 고용주 (26명 이상의 피고용인)

시간당 **\$10.50**

2016년 7월 1일

시간당 **\$12.00**      시간당 **\$13.25**

2017년 7월 1일      2018년 7월 1일

시간당 **\$14.25**      시간당 **\$15.00**

2019년 7월 1일      2020년 7월 1일

소규모 고용주 (25명 미만의 피고용인)

시간당 **\$10.50**

2017년 7월 1일

시간당 **\$12.00**      시간당 **\$13.25**

2018년 7월 1일      2019년 7월 1일

시간당 **\$14.25**      시간당 **\$15.00**

2020년 7월 1일      2021년 7월 1일

\* 2022년 1월 1일 부터 카운티의 최고경영자(CEO)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근거하여 최저 임금의 조정 비율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2022년 7월 1일자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.

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법규 챕터 8.101

## 피고용인들에 대한 고지

고용주는 피고용인들에게 그들의 직무와 급여에 관한 서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

### 최초 보수 공개 진술서:

귀하의 고용주가 귀하를 고용할 때 그는 귀하에게 다음 내용을 공개하는 진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:

- 고용주의 이름, 사업체명, 업체의 본사의 실제 주소 및 우편 주소, 이메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
- 귀하의 임금율 및 임금지불일
- 해당되는 경우에 팀에 관한 고용주의 정책
- 귀하의 급여 기준 (시간당, 주당, 커미션)
- 임금율이 결정될 수 있는 공식
- 매 급여 주기에 귀하의 급여 수표로부터 감한 공제액
- 법에 의해서 요구되는 추가 정보

### 급여 명세서:

매 임금 지불일에 귀하의 고용주는 캘리포니아 노동법 226(a)에 따라서 요구되는 다음 정보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:

- 벌어들인 총 임금 및 순임금
- 공제금
- 피고용인이 근무한 총 시간수
- 벌어들인 성과급 단위의 숫자(성과급 근로자 경우)
- 급여 기준(시간, 교대, 일, 주, 커미션)
- 피고용인에게 임금이 지불되는 기간에 포함되는 날짜
- 급여 주기 동안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시간당 임금율들과 각 임금율에 따른 상응하는 근무 시간 숫자
-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
- 피고용인의 이름; 그리고 피고용인의 사회보장번호 마지막 4자리 숫자 또는 피고용인의 아이디 번호

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법규 챕터 8.101

## 귀하의 권리는 보호를 받습니다

귀하의 고용주가 본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귀하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.

### 귀하는 고발건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:

귀하는 최저 임금 조례의 위반을 주장하여 소비자 및 비즈니스 사업국의 임금 집행 프로그램에 고발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그러한 고발은 위반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.

### 귀하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:

본 법규에 따라서 그들의 권리가 위반 당한 그 어떤 피고용인이나 독립체 또는 일반 대중을 대행하는 다른 어떤 사람도 최저 임금 조례를 위반한 고용주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법규 챕터 8.100 및 8.101

## 보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

귀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귀하의 고용주가 귀하를 상대로 보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

### 귀하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:

- 고발할 수 있는 권리
- 그 어떤 사람에게 그들의 잠재적인 권리를 알릴 수 있는 권리
- 법에 따라서 귀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

### 귀하가 귀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:

- 귀하를 해고시킨다
- 귀하의 임금을 삭감시킨다
- 귀하에 대한 차별을 한다
- 귀하 또는 귀하의 직계 가족에게 위협을 가한다

주: 귀하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할 사유가 있다면 귀하의 고용주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; 그러나 만약 고용주가 그러한 사유를 밝히지 못한다면 보복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



500 W. Temple St., Room B-96, Los Angeles, CA 90012

### 비밀 보장 및 무료 서비스

- 고발건 수사
- 근로자 및 고용주를 위한 교육
- 자료 및 조회 소개
-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자료

**800-593-8222**

wagehelp@dcbalacounty.gov  
www.dcbalacounty.gov

06/14/16